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3차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종합재가센터 제주가치 통합돌봄 및 국가형 긴급돌봄지원사업 수행인력에 따른 제공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분야	채용 인원	소속	주요업무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요양 보호사	6명	제주시 종합재가센터	-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긴급, 틈새) 제공 · 가사활동지원 · 신체활동지원 · 일사지원 등 - 국가형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6명	서귀포시 종합재가센터	
채용인원		12명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 응시자격 요건(공고일 기준)

분야	응시 자격
공통 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미만 ■ 거 주 지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두었던 기간(말소 및 거주 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성별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인사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table><tr><th>결격사유</th><th>비고</th></tr><tr><td>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td><td>[참고1]</td></tr><tr><td>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td><td></td></tr><tr><td>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td><td></td></tr><tr><td>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td><td></td></tr></table> ※ 상기 조항에 위배 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결격사유	비고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결격사유	비고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필수 요건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수료한 장애인활동지원사 - 우대사항 : 장기요양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동점자 우선 합격) 장애인활동보조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동점자 우선 합격)										
※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인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 - 「노인복지법」제28조제1항제1호(방문요양), 2호(주야간보호), 3호(단기보호), 4호(방문목욕), 5호(그 밖의 서비스 중 방문간호)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경력인정기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4장 활동지원기관에서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사업 경험											

3. 임용 조건 및 보수 수준

가. 근무/근무지: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 제주시종합재가센터·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나. 보수수준

- 기본 시간급: 11,423원(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 주휴수당 2,285원, 연차수당 657원
- 초과수당(야간, 휴일 수당) 제공(해당자에 한함)
- 4대보험 및 퇴직금적립
- 전문직배상책임공제 보험 가입
- 교통비 별도 지급(거리에 따른 수당 지급) (해당자에 한함)

거리	5km 이상 10km 미만	10km 이상 15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25km 미만	25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35km 미만	35km 이상
금액	3,500원	5,000원	6,500원	8,000원	9,500원	11,000원	12,500원

4. 채용 일정

구 분	일정	비 고
공고	‘24. 4. 9.(화) ~ 4. 17.(수)	
원서접수	‘24. 4. 9.(화) ~ 4. 17.(수) 18:00	
서류전형	‘24. 4. 18.(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안내	‘24. 4. 19.(금)	
면접시험	‘24. 4. 24.(수)	
최종 합격자 발표	‘24. 4. 25.(목)	
임용등록기간	‘24. 4. 25.(목) ~ 4. 26.(금)	
임용예정일	‘24. 4. 중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지원서 접수

가. 채용 공고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나.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공통	■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필수제출 [서식 2]
	■ 자격증 사본(요양보호사) 또는 ■ 교육 수료증(장애인활동지원사) 사본	필수제출
	■ 주민등록 초본	필수제출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등본 제출 시 인정안됨)
	■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우대사항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자(우대사항 확인)
최종 합격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 반명함 사진 1부(3*4cm)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기타 서류는 별도 안내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다. 지원서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구분	주소	비 고
전자 우편	jpass@jeju.pass.or.kr	
방문 접수	■ 제주시종합재가센터(제주시 애조로 1254, 1층) ■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05, 3층)	평일(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6. 전형절차 및 심사기준

가. 서류전형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심사방법
 - 채용분야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합격자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나. 면접시험

- 장소: 제주사회서비스원
- 면접 평정요소

공적책무성 등	인성 및 직업관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이해력·지식수준	창의성 및 전문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다. 가점 기준(우대사항)

우대 사항
■ 우대사항(동점자 발생시 우선 합격) - 장기요양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

※ 우대사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7.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에 따라 우선 합격

다. 유의사항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라. 최종 합격자 통지: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

8. 예비합격자

가. 예비합격자 제도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
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
득점자 순)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9.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

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나. 채용서류 반환

-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에 제출
- 반환방법: 응시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사회서비스원 부담)

10.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사회서비스
원·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 절차는 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발견 될시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통 등으로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 채용 결과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차.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타.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하.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노무팀(070-4173-86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참고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2023. 6. 13.>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11.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 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 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6. 13.>
 -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⑩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 ⑪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및 확인·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 [본조신설 2015. 12. 29.]